

제25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.

2016. 5. 16.

임실군의회의회장

1. 개정이유

-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미비점 보완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에 따른 일부개정 필요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 연합회관 위탁 근거중 재계약 체결 단서 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

(현 행) 조례 제7조제3항: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다만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(개정안)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조항의 내용을 자체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, 제21조의2
-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~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 등

1) 부패영향평가/규제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'16. 3. 31. ~ 4. 20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신구조문 대비표

3) 비용추계서 : 붙임(미첨부사유서)

4) 관련근거 발췌문 : 붙임

임실군 조례 제 호

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재위탁의 경우 「임실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 심의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회관의 위탁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<u>다만,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 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회관의 위탁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.</p> <p><u>다만, 재위탁의 경우 「임실군사 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 심의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재정수반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
비용추계서 해당없음

4. 작성자

주민복지과장 홍 효 덕

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16A전북임실023			
정책명	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	
	부서명	주민복지과		
	담당자명	김미순	전화번호	063-640-2076
분석평가서 제출날짜	2016년 4월 27일			
주요 분석평가 내용 (주민복지과)	<p>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미비점 보완</p> <p>- 장애인 연합회관 위탁 근거 중 재계약 체결 단서 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</p> <p>조례 제7조 제3항 단서조항의 내용을 자체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함</p>			
종합 검토 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	
	<p>「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」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</p> <p>○검토의견 반영계획서 : 해당 없음</p>			
<p>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6년 04월 27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임실군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윤진/063-640-2123)</p> <p>주민복지과장 귀하</p>				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 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1.5., 2012.8.3.>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11.5.>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11.5.>

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3.7., 2008.11.5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9.6., 2012.8.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□ **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**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, 제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)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민간위탁기관자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인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탁추진 주관 실·과·원·소장이 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“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